

동 지침은 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」 사회복지시설 대응 지침(11판)(“22.4.25. 시행)을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(심각→경계, 1단계) 및 방역 조치 전환 (“23.6.1. 시행)에 따라 수정·보완한 것으로 시설 소관부서에서 개별 사회복지시설의 사정 및 특성에 따라 적합하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.

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」 사회복지시설 대응 지침 (12판)

2023. 6. 1.



보건복지부

목 차

I. 개 요	1
II.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	2
1. 코로나19 관리체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유지	2
2. 감염예방을 위한 방역관리	2
3. 시설 운영 세부사항	3
4. 의심·확진자 발생시 조치사항	4
5. 행정사항	4
III. 지자체 협조사항	5
[참고] 보건복지 소관 사회복지시설 분류	6

I 개 요

1. 목 적

- 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(코로나19) 위기단계 하향 및 방역 조치 전환("23.6.1.시행)에 따라 **사회복지시설의 운영 방향 제시**
-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 대응절차와 조치 사항을 **자율방역체계***로 정비하여 **정상 운영** 도모
- *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안내하는 손 씻기, 환기·소독 등 개인의 일상생활에서 준수해야 하는 생활방역 수칙(권고) 수준 유지

2. 기본방향

- ☐ 일상 속 감염 확산 억제를 위해 ①자율방역 하 **사회복지시설 정상 운영 원칙**, ②지역 내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**지자체 책임하에 사회복지시설 운영 범위 조정**
- * 지자체에서 지역별 유행상황, 방역대응 역량 등을 고려하여, **강화된** 방역 조치 시행 가능
- 사회복지시설의 출입, 외출·외박, 프로그램 운영 등 제한 해제
-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에 따른 고위험군·감염취약계층 집중 관리의 방역대응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하여("22.4.18),
- **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 적용되는 입소자(입소시) 선제검사 등의 방역조치***는 별도 지침으로 지속
- * 입소자(입소시) 선제검사는 유지, 종사자 선제검사는 권고로 전환(유증상, 다수인 접촉 등 필요시 PCR 또는 RAT), 접촉력에 따른 외출·외박 허용 유지, 접촉 대면면회 허용(방역수칙준수, 취식허용)

II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

1. 코로나19 관리체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유지

- ☐ 사회복지시설 내 감염관리체계 및 비상연락체계 유지
- 복지부(중수본 및 사업부서)와 지자체, 사회복지시설간 **상시 연락체계 구축 및 시설 내 감염관리책임자(방역관리자) 등 지정**
- * 감염관리책임자 : 시설내 환자발생시 신고, 시설 내 위생물품 비치 등 수행
- ** 시설 직원을 방역관리자로 배치할 것
- 시설은 **확진자 다수 발생, 방역수칙 위반 등 특이사항**을 지자체에 보고, 지자체는 **사실관계 조사 후 복지부 보고**
- 감염병 관리 및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*과의 **비상연락체계 유지**
- * 시도 및 시군구 소관부서-관내 보건소-소방서-선별진료소-의료기관

2. 감염예방을 위한 방역관리

- ☐ 환경 위생 관리
- 화장실 등에 손씻기 시설이 없는 경우 **손 소독제**(알콜 70% 이상 손소독제 등) 등을 비치, 관리
- 시설 내 주요 공간의 **청소, 소독 및 환기 유지**
- 사람의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*에 대한 소독(**일 2회** 이상 권고)
- * 문손잡이, 난간, 다양한 터치 장치, 책상, 탁자, 의자, 전화, 컴퓨터 키보드는 하루에 한 번 이상 소독 권고
- 시설 내 환기(**일 3회 이상, 매회 10분 이상** 권고)
- 마스크 착용, 체온계, 손 소독제 등 감염 예방을 위한 물품 비치
- 올바른 방법으로 **KF80·KF94 등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며, 자가검사 키트**를 비치하여 의심증상 시 신속하게 활용

【 개인 방역 5대 중요 수칙 】 * 질병관리청, '23.6.1 개정

- ① 코로나19 예방접종 동참하기
- ② 사람이 많고, 밀폐된 곳에서 마스크 쓰기
- ③ 30초 비누로 올바른 손 씻기, 기침할때 옷소매로!
- ④ 1일 3회(회당 10분) 이상 환기, 손이 자주 닿는 표면 1일 1회 이상 소독
- ⑤ 코로나19 증상 발생 시 진료받고 집에 머물며,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

3. 시설 운영 세부사항

◇ 출입관리, 면회, 외출·외박, 식사 등 관련, 해당 시설 지침이 있는 경우 소관 시설 지침을 우선 적용하며, 개별 사회복지시설의 특성에 따라 시설 소관부서에서 달리 적용 가능

◇ 입소형 감염취약시설*이 아닌 경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는 없음

* 장기요양기관(노인요양시설,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, 주간보호기관, 단기보호기관), 정신요양시설, 정신재활시설(정원 10인 초과 입소시설), 장애인복지시설(장애인 거주시설, 장애인 쉼터, 피해 장애아동 쉼터)

□ (출입) 시설 종사자, 이용자 등은 개인위생 준수(손소독 등) 후 출입하며, 유증상자(발열, 호흡기 증상)의 출입 자제

- 자원봉사자·실습생, 외부강사 등도 시설장 판단하에 출입하되, 개인위생에 철저,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확인, 손소독 등 실시 후 활동토록 안내

□ (유증상자)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는 즉시 검사 받고, 음성 결과 확인 시까지 출근 또는 이용을 중단할 것

- 검사결과 양성(확진)인 경우 5일 격리를 권고하며, 격리기간* 등은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격리지침에 따름

* 위기단계 하향(심각→경계, '23.6.1)에 따라 5일 격리 권고로 전환

- 입소자 중 의심환자 발생 시 격리 가능한 공간을 미리 확보할 것

* 격리공간은 문을 닫을 수 있고 환기가 잘되는 공간으로 지정,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만 출입할 수 있도록 제한

□ (면회, 외출 등) 마스크 착용, 손소독, 환기 등 자체적인 방역관리를 할 경우 면회, 외출, 외박 등 제한 없음

- 다만, 외출·외박에서 복귀 후 증상확인(발열, 호흡기증상 등) 모니터링 필요

4. 의심·확진자 발생시 조치사항

◇ (대응원칙) ①의심증상자 발생시 즉시 검사, ②신속한 확진자 관리를 통해 추가전파 억제, ③상시 연락체계 유지

※ 관련 대응지침은 감염병 유행 상황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, 최신 지침 내용에 대한 숙지 필요 (질병관리청 누리집, <https://www.kdca.go.kr> 참조)

○ 시설 내 의심증상자 발생 시 진단검사 실시 및 적정 진료를 받도록 함

- (의심)환자는 격리 공간에 격리, 전용물품(개인용 수건, 식기류, 등) 사용하기 등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
- 필요시, 시·군·구(보건소) 지시에 따라 선별진료소 및 의료기관으로 이송시 타인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마스크를 착용
- (의심)환자의 이송 또는 격리 해제 이후에는 소독제 등을 이용하여 환자가 머물렀던 장소를 소독

※ 종사자 의심증상 발생 시 신속하게 검사를 실시하도록 안내하고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

5. 행정사항

□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업무배제 시 유급휴가 및 대체인력 등 활용

- (유급휴가) 확진된 종사자는 격리 권고 기간 동안 유급휴가* 처리 가능

※ 감염병관리법 제41조의2(사업주의 협조의무)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「근로기준법」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.

○ (대체인력 지원) 종사자 확진 등으로 인한 업무배제 시 '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' 사업 활용 가능

○ (업무 조정) 종사자 확진 등에 대비하여 대체 근무자 지정, 재택·원격·교대근무 등 근무형태 마련

Ⅲ 지자체 협조사항

□ (현장지원) 시군구청장은 감염병 상황에 유기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시설과 지속적 소통 체계 유지

○ (연락체계 구축) 시설 내 의심환자 다수 발생 등 비상 상황시 신속히 신고할 수 있도록 관할 시군구-사회복지시설 간 비상연락체계 구축

○ (돌봄 제공) 지자체는 사회복지시설 휴관 시,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서비스 제공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

※ 시·도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 등 활용

□ (지침 적용) 본 지침은 사회복지시설에 적용되는 기본 가이드라인의 성격으로 지자체 또는 중앙부처 시설 소관부서에서 사회복지시설별 특성 및 방역상황 등에 따라 별도 방역지침 적용 가능

참고

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시설 세부 분류

대상자별	형태	시설 종류	소관부서	관련법령
노인	생활	○ 의료	· 노인요양시설 ·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	요양보험운영과
		○ 주거	· 양로시설, 노인 공동생활가정 · 노인복지주택	노인정책과
		○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		
	이용	○ 재가	· 재가노인복지시설(방문요양, 주·야간보호, 단기보호, 방문목욕, 방문간호) · 재가노인복지시설(재가노인지원)	요양보험운영과 노인정책과
		○ 여가	· 노인복지관 · 경로당, 노인교실	노인지원과
		○ 노인보호전문기관		노인정책과
		○ 노인일자리지원기관		노인지원과
	아동	○ 아동양육시설, 공동생활가정		아동권리과
		○ 아동일시보호시설		
		○ 아동보호치료시설		
		○ 자립지원시설		
		○ 공동생활가정(학대피해아동쉼터로 지정된 곳에 한함)		아동학대대응과
	이용	○ 아동상담소, 아동전용시설		아동권리과
		○ 가정위탁지원센터, 자립지원전담기관		인구정책총괄과
		○ 지역아동센터		아동학대대응과
		○ 아동보호전문기관		인구정책총괄과
		○ 다함께돌봄센터		「아동복지법」 제44조의2
장애인	생활	○ 거주시설	·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·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·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· 장애인단기 거주시설 · 장애인공동생활가정	장애인권익지원과
		○ 쉼터	· 피해장애인쉼터 · 피해장애아동쉼터	
	이용	○ 지역사회 재활시설	· 장애인복지관 · 장애인주간보호시설 · 장애인체육시설, 장애인수련시설,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· 수어통역센터, 점자도서관, 점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· 장애인재활치료시설	장애인정책과
		○ 장애인의료재활시설		
		○ 직업재활 시설	· 장애인보호작업장, 장애인근로사업장,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	장애인자립기반과
		○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		
	영유아	○ 어린이집	국공립, 법인, 직장, 가정, 부모협동, 민간	보육기반과
		○ 정신요양시설, 정신재활시설 중 생활시설		정신건강정책과
정신질환자	이용	○ 정신재활시설 중 이용시설		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2조 및 제26조
노숙인 등	생활	○ 노숙인자활시설 ○ 노숙인재활시설 ○ 노숙인요양시설		자립지원과
	이용	○ 노숙인종합지원센터 ○ 노숙인일시보호시설 ○ 노숙인급식시설 ○ 노숙인치료시설 ○ 쪽방상담소		
지역주민	이용	○ 사회복지관		「사회복지사업법」
기타시설	이용	○ 지역자활센터		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